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18. 2. 12

위원정수 : 7명

재적위원 : 7명

1. 일 시 : 2018. 2. 19(월) 11:00
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손화희(위원장, 교원), 구건서(교원), 유상기(직원), 서단비(총학생회장), 김보은(대의원회의장), 황주리(동아리연합회장) 이상 6명

4. 불참위원 : 박승식(세무사) 이상 1명

5. 안 건 :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 심의·의결

6. 회의내용

-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「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」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
-위원장은 2018. 1.24(수) 11:00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던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의 [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한 강의B동(음악당) 환경개선 공사비를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, 등록금회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함.] 계정처리가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-위원장은 『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』에 의거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므로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비등록금회계 수입으로 편성된 환경개선 공사비를 비등록금회계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수정한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에 대한 심의·의결을 요청하다.

-위원장은 첫 번째로 위원들에게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(안)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.

-유상기위원이 환경개선 공사비를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비등록금회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이 되었기에 등록금회계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.

-구건서위원이 동의, 황주리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-위원장은 다음으로 비등록금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심사·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-위원장은 2018학년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5,000,000원을 비등록금회계

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, 임의건축기금에서 강의B동(음악당) 환경개선 공사비 8,000,000,000원을 인출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하다.

-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예산(안)을 면밀히 검토하다.

-김보은위원이 동의하고, 유상기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-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예산(안)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18. 2. 19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 손 화 희

위 원 구 건 서

장수니 유상기

서 단 비

김 보 은

황 주 리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18. 2. 19

숭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

**숭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**